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3년 창업진흥원 종합감사 -

2024. 4.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I . 감사 개요		1
II . 감사 결과		2
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 부적정		2
2. KSC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 해외송금사고 관련		16
3.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의 사업비 미정산 등 부적정		27
4. 환수금 관리 소홀 및 반납처리 지연		30
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대한 채권관리 소홀		34
6. 기타 감사 지적사항		37

I.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창업진흥원의 주기능 수행, 조직 운영·복무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 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2023. 8. 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8. 14.부터 9. 6.까지 13일간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실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감사 요청사항과 관계자 문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같은 해 9. 20.까지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대상기관 현황

가. 설립 근거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51조(창업진흥원)에 따라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8.12.24. 설립되었다.

나. 조직 및 인력

창진원의 조직은 4본부, 18실, 4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 233명, 현원 2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예산 현황

2023년 예산은 총 747,139백만원이며, 일반회계 708,462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230백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444백만원, 기후대응기금 30,003백만원으로 구성된다.

Ⅱ. 감사 결과

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가.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필요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20.7.14.)의 비대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이하 “비대면바우처”라 한다) 사업이 신설·추진되었다.

비대면바우처 사업의 추진체계는 총괄기관(중기부),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공급기업, 수요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를 거쳐 모집·선정하고,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협업 Tool),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6개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협업 Tool),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3개 분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나. 수요기업 휴폐업 및 환수 현황

본 사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가 공급기업에 전액 선납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요기업이 휴·폐업시, 공급기업은 잔여 계약기간의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을 창진원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22년 수요기업 휴·폐업에 따른 창진원의 보조금 환수는 개정된 관리지침(7차, '22.4.19)에 따라 적법하게 환수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2020년~2021년 휴·폐업한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용내역과 이 중 휴·폐업 이후 서비스 잔여기간에 대한 환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점검하였다.

다. 사후관리 절차 및 현황

비대면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사후관리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① 부정행위 점검(정기 또는 수시) → ②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재 확정(환수 및 참여제한) → ③ 환수 등 제재 통보(미납 시 최고장 발부, 총 2회) → ④(미납 시) 경영전략실 이관을 통한 회수(지급명령, 추심 등)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창진원이 점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공급기업 80개사(114건), 수요기업 205개사를 제재하였다.

부정행위별 조치 기준에 따른 제재는 수요기업 선정취소가 56건, 경고가 115건, 주의 9건, 참여 제한 0건이며, 사업지원금 환수는 3건으로 파악되었고,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1건, 서비스 판매 중지 74건, 참여 제한 3건, 사업지원금 환수는 23건이었다. 부정행위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14건은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 송치(11건), 기소(1건), 무혐의(2건), 17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가. 수요기업 휴폐업 관련 규정

2020년 11월 12일 제정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함) 제29조에서는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공급기업과 전담기관 간 협약에 따라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바우처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19일 개정(4차)된 사업관리지침 제30조에서는 제1항은 종전 제29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수요기업의 휴·폐업 등의 변동 사유로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에 바우처 결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금액 산정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간 중 해당 상품의 결제일로부터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전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후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19일 개정(7차)된 사업관리지침 제38조에서는 당초 제30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 후, 사유 발생일 이전 서비스 제공 완료가 증명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반환 금액 산정 등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업관리지침 제53조에서는 사업관리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기관 장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중 수요기업이 휴·폐업한 경우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계약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 공급기업에 선지급된 서비스 이용료를 잔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창진원이 환수하는 것은 위 사업관리지침의 규정 해석 및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나. 부정행위 관련 규정

1) 수요기업 부정행위 조치 기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37조 등에 따르면 수요기업 신청 자격이 부적격하거나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조치 기준에 따른 사유별로 제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업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창진원은 수요기업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공급기업 부정행위 조치 기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공급기업이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공급기업이 서비스 단가의 담합, 리베이트(페이백 등) 지급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라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판매 중지 등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창진원은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지원금의 횡령, 편취, 유착관계 여부를 판단하며,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고, 만약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수요기업 휴폐업 관련 공급기업 환수 부적정

1) 주요경과

창진원은 2021. 7. 28. 중기부(비대면경제과)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 중 휴·폐업한 수요기업에 대한 환수 대상·금액을 조회하였고, 2021. 8. 10. 공급기업 273개사를 환수 대상 기업으로 특정하여 환수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보하였다. 당시 창진원은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약정에 따른 해당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1개월부터 20년까지 다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창진원은 2021. 8. 17.까지 공급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토 후 2021. 12. 16 제25차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의신청 사유의 검토 등을 위해 사업운영위원회 결정이 보류되었다. 그 후 2021. 12. 29. 제27차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관리지침의 규정과 달리 서비스 이용기간이 아닌 “바우처 이용기간(수요기업이 비대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20년; 8개월 또는 ‘21년; 3개월)’ 중 휴·폐업한 경우로 환수 대상을 축소하여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와 협의·소통은 없었다. 이후 창진원은 “바우처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환수 대상을 확정하고, 2022. 1. 24. 이의신청을 한 공급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환수절차 등을 통보하였고, 여기에는 공급기업 82개사에 대한 환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기부(비대면경제과)는 2022. 3. 29. 회의를 통해 사운위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창진원은 환수 업무를 중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창진원과 별도로 중기부도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중기부(비대면경제과)는 위와 같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하고, 2022. 8. 1. 내부

보고를 마친 후, 2022. 8. 2. 환수 축소가 관리지침에 위배됨을 전제로 창진원(감사실)에 조사·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창진원(감사실)은 중기부의 공문 지시 후 4개월이 지난 2022. 12. 8. 별도의 조치 없이 관리지침에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러한 창진원의 감사 결과 회신을 수령한 직후인 2022년 12월 8일 중기부는 유선으로 2021년 7월까지의 창진원, 2021년 8월부터는 중기부의 반환 방식을 적용하여 환수 업무를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창진원은 2022년 12월 13일 중기부와 회의에서 ① 휴·폐업일에 따라 동일 기업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적용으로 인해 반환금액이 상이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②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수요기업의 휴폐업을 조회·환수하는 조항은 제4차 개정지침('21.3.19.)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 등의 법률적인 문제¹⁾의 소지가 있음, ③ 휴·폐업 반환기업 관리, 반환 안내 및 제출자료 검토, 민원 대응 등 휴폐업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할 지원 인력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환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창진원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환수 재개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환수 업무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2. 12. 20.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소관이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에서 벤처혁신정책과로 변경되었고, 창진원은 창진원장을 포함한 임원 회의에서 중기부 지시에 따라 환수금을 산정할 경우,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 환수가 필요하고, 휴·폐업 조회 기준 변경시 동일기업에 대한 환수 기준이 상

1) 창진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회의('21. 12. 21, 「휴·폐업 환수 법률 자문회의 결과보고」)에서 “4차 개정으로 신설된 사업관리지침 제30조 제2항의 경우 해당 지침의 시행일인 '21. 3. 19. 이전 수요기업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나, 최초 제정시부터 계속 규정되어 있던 제30조 제1항의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요기업이 휴·폐업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업관리지침의 개정과 무관하게 수요기업 휴·폐업시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창진원은 이러한 지침 해석·적용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여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중기부 인사 발령('22.12.20) 이후, 변경된 중기부 소관과(벤처정책과)의 담당 사무관과의 휴폐업 환수 방식 등 재논의 필요, 중기부 회의 시 휴·폐업 환수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피해 발생 및 추후 법적인 쟁점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등을 대응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2) 중기부 승인 없는 환수 범위의 임의 축소 및 국고손실(6.2억원) 야기

창진원은 '22. 1. 24. 공급기업에 대한 2차 환수 통보 시, 당시 사업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환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하고, 공급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56호)에서도 바우처 이용기간과 서비스 이용기간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창진원은 제27차 사업운영위원회를 근거로 수요기업 휴폐업 당시 “서비스 이용기간(1년에서 20년까지 다양)”이 남아 있음에도 “바우처 이용기간(20년; 8개월 또는 ‘21년; 3개월)”이 도과한 363건의 결제 건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환수 대상 축소를 인해 환수 금액이 축소되었다. 특히, 이러한 환수 축소는 사업관리지침 제53조에 따라 총괄기관인 중기부의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별도 보고·승인 없이 진행되었다.

환수 범위를 축소하는 제27차 사운위 결정은 사업관리지침의 명시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사업관리지침 제53조에 따라 사업관리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기관인 중기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에도 창진원은 제27차 사운위 결과만을 근거로, 중기부의 보고·승인 없이 환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기부의 적법한 지시 거부 및 환수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3.1억원) 야기

중기부(비대면과)는 내부 보고 후, 공문(「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 비대면경제과-513, 2022.8.2.)을 통해, 환수 축소가 관리지침에 위배됨을 명시하고 창진원에 경위를 조사한 후 조치(담당자 문책 등)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진원 감사실은 환수 면제 조치가 관리지침에 위반하는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창진원의 지시 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수요기업 휴폐업으로 인한 환수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환수 지연 중 환수대상 공급기업이 폐업함('21.6월부터 '23.11월까지 16개사)에 따라 해당 환수금의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추가적인 위험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환수 불가능의 위험은 창진원의 환수 업무 지연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추가적인 국고손실 발생 우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창진원이 환수 범위를 임의 축소하는 행위로 인해 6.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 외에도 창진원의 환수 축소를 문제삼아 향후 환수 업무에 소송 등을 통해 환수 범위를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창진원의 지시 거부와 이로 인한 약 1년 7개월 동안의 환수 업무 지연으로 인해, 그 동안 발생한 공급기업 휴폐업으로 환수금의 국고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향후 창진원의 환수업무 재개에 공급기업이 불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등 휴폐업 환수 업무에 상당한 위험(리스크)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약 100억원²⁾의 실제 환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5) 비대면경제과장의 비대면바우처 환수업무 관리·감독 소홀

비대면경제과장은 2022년 3월말 창진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던 중, 창

2) 창진원이 2021년 7월 최초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수 제외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2023년 10월) 기준 휴·폐업 잔여기간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

진원이 같은해 1월 제27차 사업운영위원회를 근거로 비대면바우처 휴폐업 환수 대상을 축소한 사실과 이러한 조치가 사업관리지침 제30조에 위반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비대면경제과장은 2021년 9월부터 비대면바우처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2021년 7월부터 비대면바우처 관련 휴폐업 환수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받는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면 2022년 1월 창진원의 환수 면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진원의 환수 면제 조치는 당시 사업관리지침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관인 중기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대면경제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사운위의 재의결 등을 즉시 요구하면서 관련자의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면제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4개월이 경과한 2022년 8월 1일이 되어서야 창진원에 감사 지시를 하는 등 비대면바우처 환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정행위 관리 부적정

1) 수요기업에 대한 제재 소홀

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기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창진원은 부정행위 기업(29개)과 유착관계에 있는 수요기업 205개사를 제재하였으나, 선정취소는 32건에 불과 하고, 대부분 경고·주의 및 시정(63건), 이외 나머지 수요기업은 자진신고에만 그쳤으며, 사업 참여 제한은 한 건도 없는 등 제재 수위를 임의로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 소홀

창진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리베이트, 페이백, 대리신청·결제 등 부정

행위 공급기업 40개사에 대해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등록 제한 및 판매 중지 조치와 함께, 사업지원금 총 523,561,600원을 환수하였다. 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급기업의 리베이트, 페이백, 대리신청·결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등록 제한, 판매 중지 등 조치와 함께 3년의 범위에서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 기업만 참여 제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기본계획, 모집공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및 중기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침 제48조에 따라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진원은 참여 제한 대상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3) 판매 중지 이후 판매 건 발생

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페이백, 대리신청·결제 등 부정행위 공급기업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공급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판매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 중지 등 제재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에 대한 통보일 또는 의결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창진원은 공급기업 “(주)☆☆” 등 총 7개 공급기업에 대한 서비스 판매 중지를 플랫폼에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상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부정행위 기업의 서비스 판매가 계속되어 결제가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지원금이 서비스 판매 중지 이후에도 부정행위 기업에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창진원장은 제27차 사업운영위원회 및 창진원의 환수 면제 통보와 관련해 “사운위 결정 및 법률검토 내용으로 환수 면제 통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국고 손실 판단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를 떠나 제27차 사운위 의결은 사업관리지침 제30조에 명확히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법률해석·적용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만약 사업관리지침 제30조의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리지침 제53조에 따라 총괄기관인 중기부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운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창진원장은 중기부의 조사·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창진원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의 감사실 예비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는 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사항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보낸 공문에 “우리부에서 검토한 결과 휴폐업에 따른 공급기업 국고보조금 환수 의무를 면제한 조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중기부 비대면경제과는 '22년 11월 10일 오후 C 감사실장과 회의를 하면서 창진원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B 실장과 C 실장은 이러한 회의 내용을 창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창진원 감사실의 감사 결과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가 아닌 “해석이 양립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이 어렵다”는 것으로, 단지 감사실장의 보고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검토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창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진원장은 중기부의 환수 개시 지시에도 불구하고 창진원의 환수 업무를 지연한 것과 관련해 “환수 관련 예산 미확보의 문제점 및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

의신청 기업과 성실 반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이로 인한 창업기업의 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운위 의결 및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중기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환수업무 재개 지시를 알고 있었던 창진원장은 2022년 12월 23일 자신이 직접 임원회의를 주관하면서 “기관 차원의 대책 방안 모색”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 및 창업기업의 피해 등 과거부터 논의되어 오던 문제점을 다시 제시하면서 중기부 조직개편(소관과 변경)을 계기로 환수업무의 재개 보다는 이미 모든 결정과 지시를 완료한 중기부를 대상으로 다시 논의·설득하려고 했음을 고려할 때, 단지 담당자의 보고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검토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창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창진원장은 창진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창진원의 모든 업무³⁾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진원 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등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3) 본건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사업 이외 아래 사업에 대한 창진원장의 관리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해임 사유로 판단함

1. KSC사업 등 해외 송금 관련 직원 대상 사전 정보보안 및 금융교육 미흡, 사전 예방 시스템(예산 통제자의 관리·감독 등) 미비 등으로 해외송금사고 발생
2.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의 '19년, '20년 사업비가 현재까지 정산·반납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그 금액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 초래
3. 창진원은 내부 경영정보시스템(MIS) 및 「회수관리업무 매뉴얼」에 따라 환수금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국고 반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실제 환수금 계좌 잔액과 MIS시스템상 금액 및 엑셀 파일상 금액이 상이하며, 환수금을 반납하지 않고 방치
4. 창업기업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채권이 소관부서로 이관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 방치되고, 체납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최고장 발송 및 법 조치 없이 전문추심업체에 채권을 위임하는 등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체납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중기부의 승인 없이 환수 범위를 임의 축소함에 따라 국고 손실을 끼친 B 실장의 행위와 B 실장의 상급 관리자로서 그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D 전문위원, A 전문위원의 행위는 창진원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①】 창업진흥원 원장은

가. 수요기업 휴폐업 관련 공급기업 환수 부적정 관련,

① 창진원장은 「창진원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업진흥원(감사)은 「창진원 정관」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원장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등의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E 원장(해임요구)**

② 중기부의 승인 없이 환수 범위를 임의 축소함에 따라 6.2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창진원 비대면창업실의 실장으로 실무 책임자인 B 실장과 그 기간 혁신창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D 본부장, A 본부장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B 실장 (중징계), D 전문위원, A 전문위원 (경징계)**

③ 중기부가 일관되게 제시한 환수 기준(“서비스 이용 기간” 기준)으로 신속한 국고보조금 환수 절차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나. 부정행위 관리 부적정 관련

수요기업의 부정행위 적발시 수요기업에 대한 제재와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적발시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판매 중지 이후 서비스가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행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조치할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가. 수요기업 휴폐업 관련 공급기업 환수 부적정 관련,

비대면마우처 휴폐업 환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당시 비대면경제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F 과장 (개인주의)

1. 업무 개요 및 절차

가. 업무 개요

창진원은 해외 현지 네트워크, 사무공간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목적으로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이하 “KSC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진원은 2023년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8개국의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였고, 2023. 6. 12. 싱가포르 액셀러레이터인 □□(이하 “싱가포르AC”라 한다)와 “2023 KSC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외송금절차

창진원은 사업담당자가 인보이스를 받아 인보이스상 금액과 협약서상 금액을 대조하고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전략실 회계담당자에게 인보이스와 외화송금신청서를 전달하면서 환율고정을 요청한다. 그 후 MIS(창진원의 경영정보시스템)에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지출결의서가 승인되면 경영전략실에 송금처리를 요청하고, 경영전략실은 증빙서류의 하자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부서가 지급을 요청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금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근거

가. 공통사항

창진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창진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창진원 「회계규정」 1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출결의와 예산통제 관련

창진원 「회계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지출원인 행위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24조의 2에 따르면 예산관리자인 관련부서(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예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산통제자를 지정해야 하고, 사업 협약기간 내 예산 집행·관리, 사업 목적과 관련 없거나 집행근거가 부족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관리, 증빙서류가 미비한 지출결의에 대한 시정 요구, 적격증빙 여부 및 거래처(계좌 정보 등) 확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규정」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예산통제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 검토시 지출원인행위의 관계규정 준수여부 및 증명서류의 요식구비와 채주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창진원 「위임전결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면 2억원 미만의 지출은 부서(실)장, 2억원 이상의 지출은 소관 본부장 전결사항이다.

다. 출납 관련

창진원 「회계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고,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로써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표 없이 금전의 출납을 하지 못하고, 금전의 지급은 지급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편 「회계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담당부서의 지출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예

산집행을 최종 검토·승인하며, 예산통제자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관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보안교육 등 교육훈련 관련

창진원 「정보보안지침」 제11조(보안교육)에 따르면 원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보안지침」 제90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따르면 원장은 기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지침 제77조에서는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해서는 안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창진원 「인사규정」 제36조(교육훈련)에 따르면 창진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제32조(교육)에서도 창진원은 근로자의 자질향상,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 등을 위해 소양 및 직무교육, 안전 및 보건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주임 H(지출발의자)의 경우

위 사람은 2022. 8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창업협력실 KSC프로그램 위탁사

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엑셀러레이터 협약 및 업무협약, 사업비 지출발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 주임은 2023. 6. 21. 사칭AC로부터 KSC프로그램 사업비 지급계좌가 변경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수신하고, 2023. 6. 28. 사칭AC의 ▽▽은행 계좌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칭AC에게 사업비 일부를 송금하였다.

창진원 보안규정 따라 H 주임은 이메일을 열람시 발신자 메일주소를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메일 수신시에는 발신자 진위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H 주임은 사칭AC가 보내온 이메일의 도메인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도메인으로 보내온 인보이스를 그대로 신뢰하여 사칭인보이스에 적힌 계좌로 사업비를 송금하였다.

한편 주관기관이 '23. 6. 20. 싱가포르AC("K")에게 인보이스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3. 6. 21. 사칭AC("K")가 위조된 수정인보이스를 H 주임의 이메일로 보내왔고, '23. 6. 22.에는 싱가포르AC("G")가 인보이스를 수정하라고 재무팀에 얘기해봤고 수정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H 주임에게 보내왔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 상반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싱가포르AC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H 주임은 이를 무시하였다.

더욱이 H 주임은 싱가포르 피싱 사건 전인 '23. 6. 13.에도 위조도메인을 통해 핀란드 사칭AC가 보내온 위조인보이스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메일 수발신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싱 메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3. 6. 26.에는 사칭 주관기관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시간흐름상 핀란드AC의 피싱 시도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싱가포르AC의 송금 사건은 피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칭AC는 싱가포르AC의 정상적인 도메인 뒤에 “-io”가 붙은 도메인과 도메인 철자를 교묘하게 변경한 도메인을 사용하였는데, “-io”가 붙은 도메인은 사칭이기는 하나 유효한 도메인으로 정상적으로 이메일 수발신이 된 반면, 철자를 변경한 도메인은 유효하지 않아 H 주임이 해당 도메인으로 발신한 이메일이 모두 전송 실패로 되돌아왔다.

H 주임은 반송되어 온 이메일들은 모두 사업비 송금과 관련된 것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H 주임은 반송된 메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창업협력실은 2020년도 이후 해마다 싱가포르AC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 액셀러레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지급을 독촉한 것은 드문 일이었음에도 H 주임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사칭AC와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AC가 런던에 소재한 은행으로 갑자기 지급계좌를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사칭계좌로 사업비를 송금하였다.

한편 창진원은 지출결의서 작성시 MIS에 거래처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은 추후 동일 지급처로 지출결의서 주로 거래처 계좌정보를 불러오기하여 인보이스상 지급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처의 계좌정보를 대조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H 주임은 거래처현황에 저장되어 있는 △△은행 계좌를 무시하고 사칭계좌(▽▽은행)를 MIS에 직접 입력하여 사업비를 지출발의 하였다. 거래처 입력 및 삭제시 별도의 결제 체계는 규정된 바 없으나, 창진원 전체 직원이 사용하는 거래처 계좌현황을 변경시에는 철저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H 주임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칭계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출결의하였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H 주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싱가포르AC에게 지급되어야 할 KSC프로그램 1차 사업비를 사칭계좌로 송금하여 창진원에 손해를 초래하였다.

2) 과장 I(예산통제자)의 경우

위 사람은 2021. 8. 2.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창업협력실 과장으로 KSC프로그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지출발의를 검토하는 예산통제자로서, 2023. 6. 28. H이 작성한 KSC프로그램 사업비 지출발의서를 검토 후 결재하였다.

I 과장은 사업담당자가 결재를 올린 지출결의 기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처(계좌 정보 등)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예산통제자로서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 검토 시 채주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위 사람은 정당한 채권자인 싱가포르AC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I 과장은 싱가포르AC가 영국 소재 ∇∇은행으로 송금을 요청한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H 주임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H 주임이 수취은행 소재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이미 확인했다고 답함에 따라 그 말을 믿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했다고 I 과장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 과장의 말대로 영국 소재 은행으로 송금을 요청한 것을 특이사항으로 생각했다면, 예산통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적정한 채주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했으나 사업비 송금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창진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3) 실장 J(중간결재자)의 경우

위 사람은 2021. 7. 12. 부터 2023. 7. 31.까지 글로벌창업협력실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사업비 지급을 위한 지출발의 중간결재자로서 H 주임이 작성하고 I 과장이 검토한 KSC프로그램 1회차 사업비 지출결의서를 검토 후 결재하였다.

J 실장은 창진원의 「직제규정 시행요령」에 따라 부(실)의 예산 신청·관리 및

집행 직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싱가포르에 기반한 AC가 영국에 위치한 ▽▽은행 계좌로 사업비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계좌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추가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결제하였고, 그 결과 창진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계좌의 진위나 소통방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은 채 지출결의서를 결제하여 창진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의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4) 본부장 A(최종결재자)의 경우

A (전임)본부장은 2022. 1. 7. ~ 2023. 7. 9.까지 혁신창업실, 글로벌창업협력실, 민관협력창업실, 팀스타운운영팀, 제도전창업실 등 4개의 실 및 1개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창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H 주임이 작성하고 I 과장, J 실장이 중간 결재한 KSC프로그램 1차 사업비 지출결의서를 최종 결재하였다.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창진원 「위임전결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면 2억원 미만의 지출은 부서(실)장, 2억원 이상의 중요한 지출은 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A 본부장은 사업본부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 본부장은 싱가포르AC 해외송금 건을 결재함에 있어서,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 영국에 위치한 은행으로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 상황임에도 계좌의 진위나 소통방법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최종 결재하여 창진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나. 정보보안교육 미흡

창진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르면 원장은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모든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보안 교육 결과를 살펴본 결과 임직원의 교육 참석율이 평균 66%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진원 정보보안담당관은 모든 임직원이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였어야 하나, 보안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창진원 「회계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담당부서의 지출담당자는 관련 부서 예산통제자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관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통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해외송금 절차 매뉴얼 부재

취업규칙 제32조(교육)에 따라 창진원은 근로자의 자질향상, 기술 및 응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소양 및 직무교육 등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금번 해외송금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송금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별도의 안내나 교육 또는 인수인계 절차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자 의견】

<H 주임>

H 주임은 창진원에 입사한 후 금번 해외송금사고시까지 해외송금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외송금을 해오던 절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번 싱가포르 피싱건은 해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본인은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등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모두 지켰으므로 해킹에 의한 피싱메일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본인은 싱가포르AC(진성, 사칭)와 주고받던 메일에 수신인이 아닌 참조자로 되어 있었고 사칭AC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메일의 출처가 의심되지 않아 도메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창진원은 자체 해킹메일 모의훈련⁴⁾을 실시하는 등 해킹 메일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로 해킹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H 주임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본인은 당초 그 이메일들의 수신자(주관기관)가 아닌 참조자였을 뿐이므로 이메일의 진위 파악이나 도메인을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출 및 KPI 워크숍은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업무이므로 창진원 담당자가 싱가포르AC와 직접 소통했어야 하고 도메인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함이 타당하므로 H 주임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I 과장>

I 과장은 창진원 규정상 예산통제자에게 “채주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지출이 적정한 거래처로 입금되도록 확인”하라는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예산통제자로서 지출결의서 검토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인보이스 내용과 송금신청서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송금신청서와 지출결의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싱가포르AC 사업비를 영국에 소재한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 “특이 사항”으로 판단하여 H 주임에게 문의를 하는 등 예산통제자로서 역할에 충신했다고 주장한다.

4) 2022년 하반기 해킹메일 모의훈련에서 해킹메일을 열람하고도 미신고하여 추가 정보보안 교육을 받음

그러나 I 과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지출결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결재자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예산통제자에게는 일상적인 지출결의 검토를 넘어 채주에 관한 걱정여부를 포함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예산통제자로서 교육을 한번도 이수한 적이 없는 등 예산통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I 과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J 실장>

J 실장은 사업비 지급에 있어 계좌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신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한 적은 없으나 사업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것을 수시로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 사업비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2023년 KSC사업비 해외송금 시 지출발의자로서 이메일 수발신 및 지출발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창진원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H 주임의 행위는 창진원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창업진흥원 원장은

① 지출발의자로서 이메일의 수발신 및 지출발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창진원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H 주임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예산통제자로서 채주에 관한 걱정여부 확인 등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I 과장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H 주임(경징계) I 과장 (개인경고)

② 사업부서의 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창진원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 J 실장, A 본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고, J 실장, A 본부장 (개인주의)

③ 또한 2023. 10월에 제정된 “해외송금 매뉴얼”을 담당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하여 금번 해외송금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고도화 및 지능화 되고 있는 해킹 범죄와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교육(예산통제자 교육 포함)과 금융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

④ 아울러 해외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연구비 송금을 위한 계좌정보를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정보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MIS시스템에 해외거래처 등록시에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을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시고, (개선요구)

⑤ 현재 경찰에서 금번 해외송금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바, 창진원의 피해액에 대한 변상 책임은 향후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창진원은 2014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사업인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이하 ‘팁스’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해오고 있다. ‘팁스’사업은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先)투자 후 정부의 R&D·사업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업력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프리팁스, 팁스(창업사업화), 포스트팁스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진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창진원의 사업비 예산은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진원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매뉴얼」에서 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정해놓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창진원 각 사업부서는 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및 사업 실적보고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및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창진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업무 지연

창진원은 2019년도 포스트팁스 및 2020년도 팁스 전체 사업에 대하여 정산 기한이 최대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3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창진원은 2019년도 팁스의 경우 실제 사용한 사업비를 잘못 정산해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산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미반납금액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2019년도 포스트팁스의 정산 검토에도 혼란을 발생시켰다.

나. 사업비 집행 승인 체계의 문제

창진원은 「통합관리지침」에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창진원과 주관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서에 “창업기업은 자체승인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18년도 이후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없이 창업기업 자체 승인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창업진흥원 원장은

①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된 '19년도 포스트팁스 및 '20년도 팁스 전체 건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토록 하며, (시정요구) 앞으로 창진원 전체 사업에 대하여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기관경고)

② 업무를 해태하여 사업비 정산 및 반납을 장기간 지연하고 정산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P 실장에 대해서는 “경고”, Q 과장, R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P 실장 (개인경고), Q 과장, R 과장 (개인주의)

③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창진원은 창업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으로 구분하여 정산하고, 정부지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고 대응자금은 사업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돌려주고 있다.

한편 창진원이 주관기관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비 불인정 금액은 반납기한을 정하여 사업부서에서 환수조치하고, 기한내에 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경영전략실로 이관하여 채권관리 및 법적조치, 채권추심업체 위임 등 환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진원은 정부 수탁사업 규모 증가와 더불어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발생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연도별 경영전략실로 이관된 환수조치 발생액이 2019년 696백만원, 2020년 969백만원, 2021년 1,053백만원, 2022년 2,033백만원의 규모에 이른다.

창진원은 2022년도 감사보고서 상(2022. 12. 31.기준) 사업부서와 경영전략실에서 환수한 “기환수금”은 4,498,904,365원으로, 경영전략실에서 앞으로 환수해야 하는 “미수금”은 3,183,123,121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창진원은 「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제재 조항) 등에 따라 사업비 환수 통보를 받은 창업기

업의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고 법 조치 등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55조(정산잔액 처리원칙)에서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채권추심 등의 금액은 환수조치 이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년도 창진원의 종합감사시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및 환수 내역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수금 반납을 정례화하도록 감사처분하였다.

이에 창진원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회수관리업무 매뉴얼」(이하 '회수관리업무 매뉴얼' 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사업비 불인정 금액의 발생 및 환수 내역 등 채권관리를 MIS(경영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환수금 계좌를 통합계좌로 일괄 운영토록 하며, 사업 정산 이후 회수한 환수금을 반기(분기)별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수관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미환수 채권에 대해 최고장 발송 및 입금내역 확인, 채권추심, 법조치 진행 등 창진원의 채권관리는 경영전략실의 업무이고, 경영전략실은 환수금 반납금액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안내해야 하며 일몰(종료) 사업은 경영전략실에서 반납을 추진해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환수금 관리 소홀

창진원의 환수금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수금 회수 및 미납관리, 분할납부내역, 법적조치 내역 등 채권관리를 MIS시스템이 아닌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환수금 입금 내역을 엑셀 파일에 철저히 입력하지 않아 환수금 계좌 잔액과 엑셀 파일에 기재된 환수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진원은 환수금 국고반납 시에도 반납 대상 및 금액 등 데이터는 PMS에 있고 반납 절차는 MIS에서 이루어져 시스템에 의한 환수금 반납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환수금 국고반납을 위해 경영전략실에서 사업부서 모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해 줄 때 그 내역을 환수금 관리 엑셀파일에 반영하지 않아 개별업체의 기환수금액과 미납금액, 반납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각 사업부서와 경영전략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채권 현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체별 미환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채권회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 감사지적사항 미이행(환수금 반납처리 지연 외)

'23. 9. 4. 감사일 현재 환수금 관리 계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진원은 환수금 관리 계좌를 총 49개 보유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지 않고 쌓아둔 환수금이 '18년 감사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창진원은 환수금을 정기적으로(반기 또는 분기)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음에도,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조치에 따른 환수금 반납 이후 일부 사업의 경우 한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등 반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특히 경영전략실은 환수금 반납금액을 반기(분기)별로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일몰(종료)사업의 반납을 추진하여야 하나, 2020년~2023년 4년 동안 사업부서에 반납을 안내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일몰사업에 대한 환수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국고 미반납금액이 창업지원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창진원은 경영전략실 업무인 일몰사업의 환수금 반납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결과·정산 보고 및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부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일몰사업에 누적되어 있는 환수금액 내역 정리 및 반납 추진 업무는 경영전략실에서 수행하도록 창진원 「회수관리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어 창진원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조치할 사항】 창업진흥원 원장은

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앞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처분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환수된 금액은 정기적으로 국고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

② 환수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창업자별 환수금 내역을 경영정보시스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력 완료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환수금을 관리하는 한편 (통보), 적립된 환수금을 국고에 반납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③ 아울러 환수금 및 채권관리 관련 용어 등 기준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PMS(창업사업통합정보시스템)와 MIS(경영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창진원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에 정부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 금액을 확정된 뒤, 이를 창업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그 회수를 위해 최고장 발송, 법조치, 채권추심업체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 절차는 최고장 1차 발송, 최고장 2차 발송, 법조치, 채권추심업체 위임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진원이 체납액을 회수할 때에는 최고장 1차 및 2차 발송, 법조치를 선행한 뒤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야 하고, 창업기업이 “분할상환약정”을 하고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체납액을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창진원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창진원은 위 채권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고장 발송 또는 법

조치를 생략한 채 채권추심업체에 그대로 위임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이 “분할상환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채무에 대한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상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청구·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 (주)■■■ 등 총 6개 창업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주)◆◆, (주)▲▲의 경우 환수가 확정되기 전 이미 파산하여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한 사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반면, (주)■■■, (주)▼▼ 등 4개 업체의 경우에는 환수가 확정되고 최장 약 3년이 지난 뒤 파산함에 따라 체납액을 회수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창진원이 이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체납액에 대한 지연이자 규모” 등을 확인한 결과, 체납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창진원은 이를 채납자에게 청구·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상위 규정(「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과 달리 하위 자체 규정인 “관리지침”에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분할상환 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면제시켜 주는 등 체납액에 대한 지연이자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부서가 체납액에 대해 최장 40개월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경영전략실로 이관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시 회수 기회를 놓치는가 하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체납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체납액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치할 사항】 창업진흥원 원장은

① 각 사업부서에 방치되어 있는 체납액을 전수 조사하여 경영전략실로 이관 조치함과 아울러 앞으로 채권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경영전략실, 사업부서 등) 직원을 대상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통보)**

② 납부기한이 초과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조속히 회수 조치하며, **(시정요구)**

③ 파산업체와 관련하여 체납액 이관을 지연한 사업부서 S 실장, T 본부장에게는 주의를, 체납액을 이관받고도 법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전략실 U 실장, V 주임에게는 경고를 촉구하고, **(개인주의·경고)**

④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하며, **(개선요구)**

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거나 최고장 발송 및 법조치 없이 전문추심업체에 채권을 위임하는 일 등이 없도록 체납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1	연구용역계약 업무처리 등 부적정	오래전 지표를 활용하거나 잘못된 수치로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완료 처리하는 등 연구용역 검수 업무처리 부적정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절차 누락, 동일 업체와 4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 일부 결과보고서 대외 미공개등 업무 불철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및 평가결과서 제출조치(시정요구) 결과보고서 공개 이행시한 등 관리지침 개정(개선요구) 담당자 14명(개인주의) 담당자 2명(개인경고) 용역 부실 수행업체 제재조치 방안 마련(통보)
2	감사실 업무 처리 부적정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및 사고보고 미흡, 법률 자문 용역비 임의 차감 건에 대한 감사실 처분·대응 미흡	담당 실장 주의(개인주의) 주무기관 보고 철저(기관경고)
3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 인건비 집행관리 부실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나, 인건비 지원	행안부 시스템 연계 등 친족 관계 확인 방안 마련(통보)
4	창업기업의 외주용역계약 업무 관리 소홀	2천만원 초과 용역계약 중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할 증빙자료 없이 홈페이지 미공고, 사업운영팀 사전 미심의	용역절차 생략 불가피성을 인정할 증빙자료 징구(통보)
5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사업운영팀 위원 위촉(개최시 마다 위촉시 자격요건 및 제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약서로 갈음 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 하고, 일부 사업은 별다른 이유없이 심의 안건 원안을 수정해 의결(회의록 없어 확인 불가)	사업운영팀 위원 선발 및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기관주의) 담당 부서장 2명(개인주의)
6	시제품제작터 주관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소홀	국유재산(지방청 사무공간) 무상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체 지침에 근거해 주관기관(민간)에게 국유재산 무상 제공	중기부와 협의해 사업 운영 지침 개선(개선요구)
7	국고보조금 사업 중요재산 취득 공시 위반	보조금 자본보조를 통해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통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8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대상 사업 선정 부적정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대상이나 선정·지원	담당실무자 3명(개인경고), 담당실장 3명(개인주의)
9	아기유니콘 200사업 선정 부적정	창업기업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업 선정	담당실무자 2명(개인경고)
10	외부기관 포상 추천 부적정	포상이 제한되는 직원이 외부기관 포상을 수여하는 경우 발생	포상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업무관리 철저(개선요구)
11	예산집행 비목 부적정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을 목적과 다르게 부적정 사용	예산 집행관리 철저(기관주의)
12	국외출장 등 운영 부적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검증자료 미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누락	검증자료 징구 철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우선 활용 촉진(통보)
13	부가급여 세부 지급근거 미흡	부가급여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명확성 저해 우려	부가급여 지급 관련 규정 보완(통보)
14	인건비 예산 집행 부적정	연말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차년도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	담당 실무자 1명, 본부장 1명(개인주의)
15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자산취득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	자산취득비 집행업무 철저(기관주의)
16	징벌 처리 및 관리 소홀	업무담당자의 주의 또는 경고장 발부 규정 미숙지 및 미발부 '시정' 조치 기록의 말소 기간이 없는 등 규정 미비	담당 실무자 4명(개인주의), 실장 2명, 본부장 1명(개인경고) 시정 조치 기록 말소 방안 마련(통보)
17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서면의결 및 회의록 미작성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철저(기관주의)